2011년7월21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여러분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기술위원장 이시이 츠네히코

약사법대책위원장 미타니 미츠마사

**“효능평가 시험완료”의 제품표기에 대해**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한편, 2011년 7월 21일자 약식발 0721 제1호 “화장품의 효능범위 개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장 통지에 의해 화장품의 효능범위가 개정되어, 화장품에서 “건조에 의한 잔주름을 돋보이지 않게 한다”의 효능을 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개정을 심의한 후생노동성 화장품의약부외품부회에서 이 효능을 표방할 경우, 일본향장품학회의 “화장품 기능평가법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시험하고, 그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시험했다는 내용을 화장품에 표기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별첨을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자발적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여러분께서는 본 자발적 기준을 준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별첨

2011년 7월 21일

**“효능평가 시험완료” 제품표기에 대하여**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자발적 기준)**

2011년 7월 21일자 약식발 0721 제1호 “화장품의 효능범위 개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통지에서 화장품의 효능으로 추가된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돋보이지 않게 한다” 또는 이를 바꿔 말한 표현을 화장품(약용화장품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경우, 일본향장품학회 “화장품 기능평가법 가이드라인”의 “신규 효능 취득을 위한 항주름 제품평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는 시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적절한 시험을 실시해 결과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2011년 7월 21일자 약식심사발 0721 제1호/약식감마발 0721 제1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심사관리과장 및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장 통지 참조).

위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에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돋보이지 않게 한다” 또는 이를 바꿔 말한 표현을 표시할 경우, 이들 효능에 \*와 같은 표시를 한 다음 “\*효능평가 시험완료”라고 제품에 표기한다.

단, “\*효능평가 시험완료”라는 표기는 큰 활자로 기재하거나 색조를 변경하는 등 강조하여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상